

## 대학원학칙 경영전문대학원 시행세칙

2006.9.1. 제정  
 2007.3.1. 개정  
 2008.9.1. 개정  
 2010.9.1. 개정  
 2011.3.1. 개정  
 2015.3.1. 일부개정  
 2015.9.1. 일부개정  
 2016.9.1. 일부개정  
 2017.3.1. 일부개정  
 2017.9.1. 일부개정  
 2018.9.1. 일부개정  
 2020.3.1. 일부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본교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경영전문대학원(이하 "전문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교육목표) 본 전문대학원은 세계적 수준의 경영전문인력 양성을 그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최신 경영이론의 체계적 교육과 윤리경영의 가치추구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필요한 실천적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 제 3 조 (교과과정) 본 전문대학원에는 전문석사학위인 Korea MBA (K-MBA), Executive MBA (E-MBA), Finance MBA (F-MBA), Global MBA (G-MBA), S<sup>3</sup> Asia MBA (A-MBA), Global MIM (G-MIM) 과정을 둔다.

###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 4 조 (정의) 수업연한은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등록기간을 의미하며 재학연한은 입학 후부터 졸업 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 5 조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전문석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재학연한을 경과한 자는 제적 처리한다.
- ① K-MBA, E-MBA, F-MBA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이며 재학연한은 입학 후 4년으로 한다.
  - ② G-MBA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이며, 재학연한은 입학 후 3년으로 한다.
  - ③ A-MBA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6개월이며, 재학연한은 입학 후 3년으로 한다. 단, 후단대 복수학위 선택시 수업연한은 2년, 재학연한은 3년으로 한다.
  - ④ G-MIM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이며, 재학 연한은 입학 후 3년으로 한다.

### 제 3 장 수 업

- 제 6 조 (수업과 방법) ① 수업은 원칙적으로 G-MBA, A-MBA, G-MIM과정은 주간예, K-MBA, F-MBA 과정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고, E-MBA 과정은 주말에 실시한다.

단, 필요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② G-MBA과정은 2개월을 1개 모듈로 하는 모듈제로 운영한다.

③ A-MBA과정은 학기제로 운영하되, 후단대, 고려대,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각각 한 학기씩 수학한다.

④ G-MIM과정은 2개월을 1개 모듈로하는 모듈제로 운영하되, 협정교에서의 수학기기는 협정교의 학사일정에 따른다.

#### 제 4 장 입 학

제 7 조 (입학시기) 모든 MBA 과정은 연 1회 선발을 진행한다. K-MBA, E-MBA, F-MBA 과정은 상반기 입학을 하며, G-MBA, A-MBA, G-MIM과정은 하반기 입학을 한다.

제 8 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특별전형으로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과정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지원절차) ①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할 경우 당해 년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은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재입학은 제적이전과 동일한 과정일 경우에 한한다.

③ 재입학자가 사용 가능한 휴학 기간은 재입학 전, 후를 합하여 통산 휴학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재입학시 등록금 및 해당 학칙은 재입학하는 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제 11 조 (정원의외 입학) 대학원 학칙 제4조의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의외로 입학할 수 있다.

① 국가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②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외국인 학생.

③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④ 그밖에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에 따라 정원의외 입학이 허용된 사람.

#### 제 5 장 등록과 수강신청

제 12 조 (등록) 등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제 13 조 (등록금) ①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

③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본교 학칙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미졸업자 등록금 학비 감면) 전문석사과정 미졸업자로서 정규학기 초과 등록하는 자의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해당 학생은 소정 기일에 학비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K-MBA, F-MBA과정의 추가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교과학점 1~3학점 수강신청자는 등록금의 4분의 1 납부
2. 교과학점 4~6학점 수강신청자는 등록금의 2분의 1 납부
3. 교과학점 7학점 이상 수강신청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

- ② E-MBA과정의 추가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교과학점 1~3학점 수강신청자는 등록금의 4분의 1 납부
  2. 교과학점 4~6학점 수강신청자는 등록금의 2분의 1 납부
  3. 교과학점 7학점 이상 수강신청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
- ③ G-MBA, G-MIM 과정의 추가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1. 교과학점 6학점 이하 수강신청자는 등록금의 5분의 1납부.
  2. 교과학점 6학점 초과, 9학점 이하 수강신청자는 등록금의 3분의 1납부.
  3. 교과학점 9학점 초과, 12학점 이하 수강신청자는 등록금의 2분의 1 납부.
  4. 교과학점 12학점 초과 수강신청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
- ④ A-MBA과정의 추가등록금은 제 40조에 정의된 Joint Academic Committee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 15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속 과정의 학과내규와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한다.
- ② K-MBA, F-MBA과정의 경우, 학기별 상한 취득학점은 15학점까지이다.
- 제 16조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 수강신청 정정은 소정기간 내에서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간 이후에는 교과목을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 제 17조 (재수강)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다. 재수강시 최고성적은 A로 한다.
- 제 18조 (최소 수강인원) 선택과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인원이 최소 10명 이상이 되어야 개설가능하다.

## 제 6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 19조 (휴학) ① 휴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휴·복학원 접수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임신,출산 질병 외의 사유로는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 ③ 제2항의 사유 중 임신, 출산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질병의 경우는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 또는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0조 (휴학인정사유) ①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
- ②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1년 이하의 기간동안 휴학할 수 있다.
- 제 21조 (휴학기간) ① 전문석사학위 과정의 휴학기간은 통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군복무,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군복무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정한다.
- 제 22조 (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 ② 복학하려는 자는 휴·복학원 접수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3조 (자퇴) 자원하여 퇴학을 하려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야 한다.

제 24조 (제적) 본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적한다.

- ①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② 군입대 휴학자로서 제대 후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2조에서 정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④ 제38조에 정의된 징계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된 자.
- ⑤ 자퇴한 자.

## 제 7 장 수료연구생

제 25조 (정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매학기 소정의 등록을 하고 있는 학생을 “수료연구생”이라 한다.

제 26조 (등록) ① 수료연구생은 학위취득 시까지 매학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미등록한 경우에는 제30조의 수료연구생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 ③ 수료생이 수료연구생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7조 (휴학 및 복학) ① 잔여 휴학기간이 있는 수료연구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휴학기간은 과정을 통산하여 제 21조에 따르며, 복학하려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이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조 (자퇴 및 등록금 환불) 수료 후 본인이 자퇴원을 제출할 경우 제적처리 되며, 이 경우 등록금환불규정에 의하여 수료등록금은 환불한다.

제 29조 (영구수료) 수료 후 재학연한이 경과하면 영구수료 처리된다.

제 30조 (수료연구생의 권리) 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다.

- ② 재학생에 준하는 학업을 위한 시설(도서관 및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수료연구생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수료연구 등록을 한 학생은 학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⑤ 소정의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 31조 (준용) 복학, 제적 등 이 장(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또는 이 세칙의 조항을 따른다.

## 제 8 장 교환학생

제 32조 (교환학생) ① 본 전문대학원과 국외전문대학원 사이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을 근거로 마련된 교환학생제도(ESP, Exchange Student Program)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모든 전문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 ② 교환기간은 1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교환학생은 교환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반드시 재학생(또는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3조 (교환학생 학점인정) ① 교환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학생은 교환대학 수강신청 전 수강 예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 및 부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 해야 한다.

- ② 귀국 후 즉시 ‘학점인정신청서’에 학점인정 방식, 수강과목 개요를 기재하고 교환대학 성적표를 첨부하여 주임교수와 부원장의 확인을 거쳐 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 ③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과목명과 학점은 본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학점인정은 원칙적으로 정규학기 학술교류협정의 교환프로그램에 한한다.
- ⑤ 교환학점을 인정받아 졸업을 하고자 할 경우, 졸업심사를 위한 사정회의 이전에 성적인정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성적인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졸업은 다음 학기로 이월된다.

## 제 9 장 학위수여

- 제 34조 (졸업요건) ① 본 전문대학원의 모든 MBA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최소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충족하고, 평균 3.0이상인 자에 한하여 각 과정별 정하여진 규정에 의거 모든 졸업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졸업 및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다.
- ③ 각 과정별 세부사항은 각 과정 내규로 정한다.
- 제 35조 (학위취소) 본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전문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취소한다.

## 제 10 장 복수학위

- 제 36조 (복수학위) ① 본 전문대학원과 국외전문대학원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 사이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을 근거로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원 및 취득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교와의 학술교류협정을 참조한다.
- ② A-MBA과정은 3개 대학 공동운영 전문석사 복수학위 과정으로 입학생들은 입학 학교와 다른 2개의 협정을 맺은 파트너 대학들 중 1개의 학위를 선택 총 2개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제 2학위는 입학 시에 선택, 추후 변경할 수 없으며, 각 대학이 규정하는 졸업 및 학위 취득 조건에 부응하는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 단, 후단대 복수학위 신청 시 후단대에 한 학기 추가 등록해야 한다.
- ③ 본 전문대학원 K-MBA 또는 F-MBA 과정을 마친 학생이 본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1년의 과정을 이수하면 두 개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 ④ G-MBA 과정의 입학생들은 본교 학위와 더불어 ESCP(Ecole Supérieure de Commerce de Paris) 또는 EBS(European Business School)의 석사 학위를 복수로 취득할 수 있다.
- ⑤ G-MIM 과정의 입학생들은 본교 학위와 더불어 CEMS MIM(Master in International Management)을 복수로 취득할 수 있다.

## 제 11 장 포상 및 징계

- 제 37조 (장학금) 장학금은 과정별 내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 38조 (징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정학, 퇴학 및 출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2. 고의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3. 시험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
- ② 징계의 대상이 되는 학생에게는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징계는 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다.

## 제 12 장 전문대학원위원회

제 39조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 본 전문대학원위원회는 전문대학원장, 전문대학원 부원장, MBA 과정 주임교수로 구성하고 전문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전문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1조에 의거한 안건을 심의한다.

제 40조 (Joint Academic Committee) ① A-MBA과정은 3개 대학교(고려대, 싱가포르국립대, 후단대) 전문대학원의 원장과 각 전문대학원에서 지정한 대표자 1인을 포함한 총 6명으로 구성된 "A-MBA Joint Academic Committee"(JAC) 가 모든 학사와 운영에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관리 감독한다.

② G-MIM 과정은 전문대학원의 원장 또는 전문대학원 원장이 지정한 대표자가 CEMS 관련 위원회에서 학사와 운영과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한다.

제 41조 (내규)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6년 8월 31일 이전에 경영대학원으로 입학한 재학생은 입학당시의 경영대학원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의 변경사항, 제6조 신설, 제7조 내지 제13조의 조번호 변경은 2006년 9월 1일부로 적용한다.  
② 폐지된 경영대학원으로 2006년도 3월에 입학한 자가 졸업하는 2008년도 8월 31일까지 경영대학원을 존속시킨다.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전면개정)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제6조-제8조, 제15조, 제16조 개정, 제8장 신설, 제9장-제12장 장번호, 조번호 변경)

###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전면개정)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제25조 개정, 제8장 삭제, 제35조 내지 제 42조 조번호 변경)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개정, 제7장 신설, 제25조 내지 제34조 조번호 변경)

##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개정)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 개정)

##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36조 개정)
2. 이 개정세칙 중 제14조 1항의 K-MBA과정과 제19조2항,3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36조, 제40조 개정)

##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6조 개정)